

---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지침

---

2024. 1.



기획재정부

# 차 례

I.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제도 .....	1
1. 목적 및 근거 .....	1
2. 주요내용 .....	1
3. 추진체계 .....	2
II.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의 구매 .....	2
1.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개요 .....	2
2. 제품 구매 절차 .....	3
III. 구매실적 인정기준 및 집계·제출방법 .....	7
IV. 협조사항 .....	10
[붙임 1] 우선구매제도 관련 근거 법령 .....	12
[붙임 2] 수의계약 관련 근거 법률 .....	13
[붙임 3] 구매실적 및 계획 제출 대상 공공기관 .....	15
[붙임 4] 공공기관 구매실적 관련 평가지표 .....	22
[붙임 5]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 방법 .....	26
[붙임 6] 자주하는 질문(FAQ) .....	35

## 1. 목적 및 근거

- (목적) 공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 및 서비스)을 적극적으로 우선구매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 판로지원 및 자생력 제고
- (법적근거) 「협동조합기본법 제95조의2 및 시행령 제26조」

## 2. 주요 내용

- (우선구매)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함
- (대상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붙임3) 참고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사·공단), 지방의료원, 특별법인\*\*
- \* 교육청(17개)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공립 교육기관의 실적을 취합하여 제출
- \*\* 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협동조합중앙회,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 (실적 및 계획 제출) 대상기관은 해당연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구매실적 및 당해연도 구매계획을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 [www.sepp.or.kr](http://www.sepp.or.kr))에 입력
- (공고) 기획재정부는 구매실적과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고
  - 제출기한(2월말)까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고 시 명단 공개



- 사업자번호가 포함된 사회적협동조합 리스트는 상시 업데이트되며,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e-store 36.5(sepp.or.kr), 협동조합 홈페이지(coop.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회적협동조합 리스트(사업자등록번호 포함) 확인 방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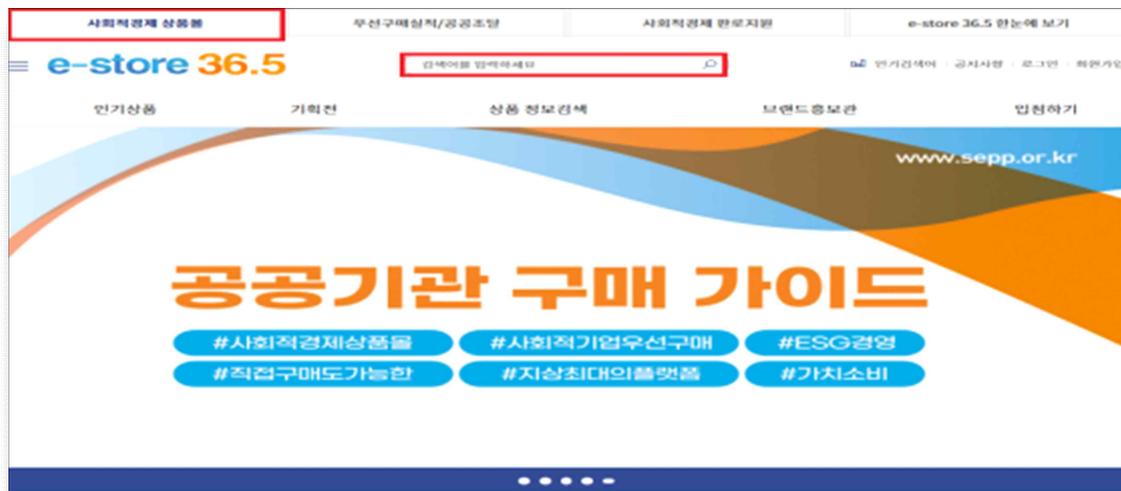
- \* ① e-store 36.5 접속 → ② 로그인(공공기관 회원) → ③ 우선구매실적/공공조달 → ④ 우선구매 공지사항 → ⑤ '사회적협동조합 리스트' 게시글 확인 및 다운로드

## 2. 제품 구매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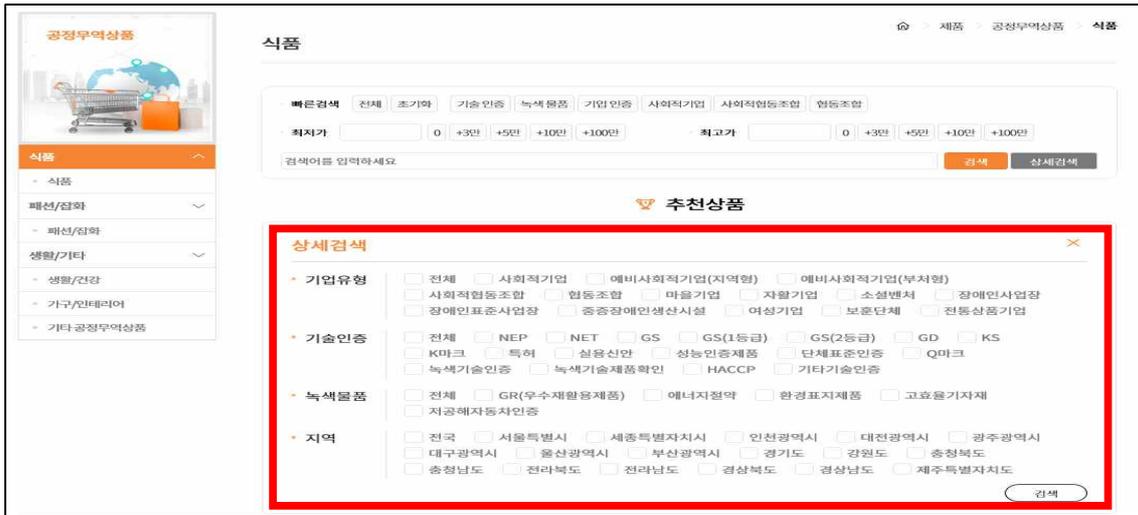
### 1 단계 : 구매대상 품목 확인

#### □ e-store 36.5(sepp.or.kr) '사회적경제 상품물'

- (통합검색으로 찾기) 화면 중앙 상단의 통합검색창을 활용하여 상품명 및 기업명 등 검색



- (상품분류로 찾기) 좌측 상단 메인메뉴(3선)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 선택 후 상세검색 창에서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검색



- (인증유형별 검색) 화면 중앙 상단 [인증상품관]을 통해 인증기업 및 상품 유형별 검색 가능



## □ 공공구매 지원센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내 설치된 공공구매 지원센터를 통해 구매 상담 가능(☎1566-5365)

## □ 나라장터 내 '사회적가치실현 기업 인증물' 이용

-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내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을 판매하는 인증물 통한 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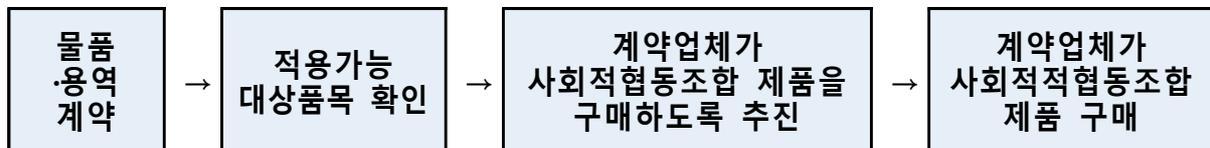


## ② 2단계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방법 결정

### □ 구매방법

- (직접구매) 공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과 계약하여 직접 구매하는 경우 자체구매 또는 조달구매(조달청을 통한 구매) 결정
- (간접구매) 공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기업(비사회적협동조합)과 계약체결 후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을 구매하도록 요구
  - \* 업체가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을 구매할 경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구매실적으로 인정 (단, 계약과 무관한 구매, 구매대금이 아닌 출연금·기부금·보조금 등을 통한 구매는 불인정)
  - \*\* 단, 계약업체와 사회적협동조합간 구매 증빙자료로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보관하여야 함(구매실적 제출시 증빙자료 제출 불요, 요청시에만 제출)

#### < 간접구매 절차 >



### □ 계약방법

- 구매 품목 및 추정 가격에 따라 제한 및 지명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등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
-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관련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

- (수의계약) 취약계층 고용비율 30%를 충족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해 1인 견적 5천만 원, 2인 견적 1억 원까지 수의계약 가능

\*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3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는 해당 기업이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를 통해 신청 및 발급 가능
-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서는 해당 기업의 취약계층고용비율 확인서를 확인(한국사회적기업지원 발급) 후 수의계약 체결

- (입찰자격 평가) 낙찰자 평가기준에 사회적 가치 항목을 반영

- 물품 또는 용역 낙찰자 결정 시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 항목 중 사회적협동조합 가점 부여를 활용
- 자치단체 조례 및 공공기관별 구매지침 등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검토 및 심사 시 반영

### ③ 3단계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로 서비스업 비중이 높으며, 교육·돌봄 등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에 시설·사업 운영을 위탁한 경우, 계약금액을 구매실적으로 인정

\* (참고자료)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 → 자료실 → '사회적협동조합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 < (참고)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가능한 서비스 품목 >

구분	구매사례	품목
교육	방과후교실 위탁, 취업교육 등	· 창업아카데미, 취업성공패키지, 방과후돌봄교실, 놀이시설 안전교육 등
돌봄/의료	직원 건강관리, 돌봄시설 위탁	· 예방접종, 건강검진,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등
공연/문화 도시락	공연, 문화행사 식사, 다과준비	· 오케스트라, 뮤지컬, 타악연주 등 · 케이터링, 도시락
청소/방역	건물관리, 청소	· 청소, 소독, 방역,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재활용, 세차, 시설관리 등
인쇄/IT/디자인	인쇄물, 홍보물	· 현수막, 리플렛, 명함, 기념패, 웹디자인 등

### III

## 구매실적 인정기준 및 집계·제출방법

### □ 구매실적 인정기준

-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구매한 실적만 인정되며, 일반협동조합 및 농협·생협 등에서 구매한 실적은 인정 불가
  - 사회적협동조합 지사무소(지점)을 통해 구매한 경우도 인정
    - \* 단, <sup>1)</sup>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sup>2)</sup>본점 및 지점 사업자등록증(법인번호 동일인지 확인) 등 증빙자료 확인·보관
- 직접구매 및 간접구매 실적도 구매실적으로 인정
  - 자치단체에서 발행된 바우처 등이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의 구매에 사용되어 대금이 지급된 실적 인정
    - \* 단,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에 사용된 바우처 실적만 인정되며, 출연금·기부금·보조금 등을 통한 구매는 불인정

### □ 구매실적 제외 기준

구분	세부 내용	총구매액 (분모)	구매실적 (분자)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li> <li>* 기관평가 시에는 평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li> </ul>	제외	포함
재화서비스 구매와 관련 없는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운영을 위한 일상경비적 지출(인건비, 공공요금, 각종 보험료, 식대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자문료·사례금·수당,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등</li> </ul>	제외	제외
원자재·재료 구매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스, 석유, 전력, 유류, 연료, 광물 등</li> </ul>	제외	제외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구매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유통업체(장애인 판매시설, 일반 판매점 등)로부터 구매한 내역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구매액</li> <li>■ 유통 전문 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 구매한 내역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구매액</li> <li>■ 세트상품은 세트를 구성하는 물품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기업이 생산한 물품가액이 전체 가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li> </ul>	포함	제외

구분	세부 내용	총구매액 (분모)	구매실적 (분자)
공공기관 자회사와의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 자회사(동일 공공기관의 자회사)와의 위탁계약의 경우, 총구매액 및 구매실적 제외</li> </ul>	제외	제외
그 밖의 총구매액 제외로 인정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3항에 따른 구매 목표비율 협의가 완료되고, ②1번의 협의 사유가 사회적기업 구매실적에도 적용되어 총구매액 제외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경우 ③1,2번 협의 완료 후 사회적협동조합 구매실적에도 적용되어 총구매액 제외가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가 인정한 경우</li> </ul>	제외	제외

※ 공공기관 간 거래 → 수탁 공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구매실적은 위탁한 공공기관의 간접구매 실적으로 인정 / 단, 수탁 공공기관의 직접구매 실적으로 포함한다면, 위탁 공공기관의 간접구매 실적에서는 제외 (\*실적 중복인정 x)

**< (예시) 보조금성 통계목 우선구매 실적 세부기준 >**

	사업운영 보조금(실적포함)	기업운영 보조금(실적 제외)	
개념	사업의 운영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	기업의 운영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	
세부 설명	지자체가 사회적협동조합에 시설·사업 운영을 위탁, 또는 공모 사업 등 수행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제품(재화 및 서비스)과 관계없이 기업의 운영 등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동네 초등돌봄 시범사업 보조금</li> <li>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운영비</li> <li>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li> <li>사회적주택 운영인력비</li> <li>마을교육 전문가 양성 사업비</li> <li>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 보조금</li> <li>주거취약계층 주택개선사업 보조금</li> </ul>	경비성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상품권 거래대금</li> <li>노후경유차 폐차보조금</li> <li>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li> </ul>
		보조금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청년일자리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li> <li>지역특화사업</li> <li>사회보험료, 공공요금</li> <li>자활기금 대여(기업자금 대출)</li> <li>자문료, 사례금, 시상금, 수수료, 이자 등</li> <li>휴업지원금, 재난긴급지원금, 생존자금 등 보조금</li> <li>사례관리 대상자 생계비 지원</li> </ul>

## □ 총구매액 및 구매실적 집계방법

- (총구매액) 물품 및 용역(공사 제외)의 총 구매금액
  - 품의 유형과 무관하며, 물품(재화), 용역(서비스) 구매 관련 예산 비목으로 지출한 총구매액
- 집계기준은 계약일이 아닌 대금 지급(집행)일 기준이며, 계약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대금 지급일 기준임
  - \* 2023년 구매실적 대상기간은 2023.1.1.부터 2023.12.31. 까지
  - \*\* 2024년 구매계획 대상기간은 2024.1.1.부터 2024.12.31. 까지
- 구매실적은 제품 구매 대금지급처의 사업자번호와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번호의 매칭을 통해 구분하여 집계
  - (국가기관·자치단체·교육청·지방공기업·의료원) 기관의 재정시스템을 통해 집계
    - \* dBrain(국가기관), e-호조(자치단체), 에듀파인(교육청), LOBAS(지방공기업), K-HOPES(지방의료원)
  - (그 외 공공기관) 사업자번호가 포함된 사회적협동조합 리스트를 자체 재정시스템에 반영하여 집계
  - 기관의 재정시스템으로 집계되지 않는 구매실적 및 간접구매 내역은 구매증빙 등을 확인하여 수기로 집계 필요

## □ 구매실적 제출방법

- 최상위기관이 산하 소속기관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합산하여 최상위 단위 전체 실적으로 제출
  - \* (예)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이 소속기관인 교육지원청(각급 국·공립교육기관 포함)의 실적을 합산하여 제출
- e-store 36.5(www.sepp.or.kr)에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입력
  - \* '공공기관' 회원ID 중 '실적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은 아이디만 실적 입력 가능

- 모든 공공기관은 [품목별 구매실적]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월별 구매실적]으로 등록 가능
  - \* (품목별 구매실적 작성항목) 지급일자, 적요(건명),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 등록번호, 지급금액 등
- 공공기관은 구매실적에 대한 증빙자료(구매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보관해야 하며, 실적 입증 필요시 기획재정부에 제출

#### IV 협조사항

- 사회적협동조합(유통전문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 판매시설, 일반판매점 등)으로부터 제품 구매 시 실적 확인 철저
  - 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이 구매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한 제품'이어야 함
    - 따라서, 유통전문 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 구매한 제품 중 사회적협동조합 제품과 무관한(대기업 전자제품 등) 경우는 반드시 구매실적에서 제외하여야 함
      - \* '23년 실적분 제출부터 제출된 우선구매 실적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공공기관이 고의·허위로 실적을 제출한 경우 해당 사실을 평가부처(행안부, 기재부)에 통보할 계획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제도 정착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조례 및 계약 관련 규정 등에 사회적가치 항목(참가자격 및 평가기준 등) 반영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산하 기관에서도 구매계획이 수립되도록 관리
    - \* 제품 구매계획 수립 시, 전년도 구매 실적보다 높은 비율로 수립

## □ 우선구매 교육 및 구매 독려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의 이해 및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구매 담당자 교육 등 실시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공공구매지원센터, ☎1566-5365)을 통해 교육을 포함한 구매상담회 등 개최 협조 요청
  - \*\* 진흥원 온라인 교육플랫폼(<https://coopedu.step.or.kr>)을 통해 '공공기관을 위한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제도 교육' 상시 수강 신청 가능
-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업체(용역)와 계약체결 시, 계약수행 과정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을 이용하도록 적극 독려

**협동조합기본법 제95조의2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신설: '14.7.22.부터 시행)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

(신설: '14.7.22.부터 시행)

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구매 계획 및 전년도 구매 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의 구매액 비율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익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익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참고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익계약을 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참고2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제10조(소액수익계약 체결절차 등) ⑥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5)다)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의 **취약계층을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 고용한 자**를 말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가목5)다)의 자(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와 수익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수익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등(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한다)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익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 참고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단서 및 제30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30% 이상**으로 한다.
2. 위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합에 적용한다.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 붙임 3

### 구매실적 및 계획 제출 대상 공공기관

□ '23년 구매실적 및 '24년 구매계획 제출 대상 공공기관: 863개 기관

○ 전년비 변동사항

- (신규, 3개소) 재외동포청(국가기관), 익산시도시관리공단(지방공기업), 한국특허기술진흥원(기타공공)
- (유형변경, 43개소)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4개소(공기업→기타공공), 사립교직원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39개소(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 (해제, 4개소)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기타공공)
- (통합, 1개소) 부산시설공단+부산지방공단스포윈→부산시설공단(지방공기업)

<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현황 ('23.12월 기준) >

(단위: 개)

국가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기타특별인	합계
	광역시	기초								
56	17	226	17	32	55	260	159	35	6	863

구분	기관명	
국가기관 (56)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병관리청, 재외동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243)	광역시 (17)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기초 (22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구분	기관명
	<p>(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북구</p> <p>(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군위군</p> <p>(인천광역시) 강화군,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옹진군, 중구</p> <p>(광주광역시)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p> <p>(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p> <p>(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p> <p>(경기도)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p> <p>(강원도)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p> <p>(충청북도)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p> <p>(충청남도)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p> <p>(전라북도)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p> <p>(전라남도)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p> <p>(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포항시</p> <p>(경상남도)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p>
<p><b>교육청</b> (17)</p>	<p>서울특별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p>
<p><b>공공기관</b> (350)</p>	<p><b>공업</b> (32)</p> <p>(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강원랜드</p> <p>(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p> <p>(기재부) 한국조폐공사</p> <p>(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주)</p> <p>(농식품부) 한국마사회</p> <p>(산업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p> <p>(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p>

구분	기관명
	<p>(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p> <p>(해수부) 해양환경공단</p> <p>(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p>
<p style="text-align: center;">준 정 부 기 관 (55)</p>	<p>(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p> <p>(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p> <p>(복지부) 국민연금공단</p> <p>(고용부) 근로복지공단</p> <p>(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p> <p>(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p> <p>(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p> <p>(교육부) 한국장학재단</p> <p>(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p> <p>(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p> <p>(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p> <p>(문체부) 한국관광공사</p> <p>(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p> <p>(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p> <p>(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p> <p>(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p> <p>(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p> <p>(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p> <p>(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p> <p>(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p> <p>(공정위) 한국소비자원</p> <p>(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p> <p>(경찰청) 도로교통공단</p> <p>(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p>
<p style="text-align: center;">기 타 공 공 기 관 (260)</p>	<p>(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p> <p>(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투자공사</p> <p>(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p>

구분	기관명
	<p>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 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p> <p><b>(과기부)</b>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p> <p><b>(외교부)</b>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p> <p><b>(통일부)</b>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p> <p><b>(법무부)</b>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p> <p><b>(국방부)</b>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p> <p><b>(행안부)</b>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p> <p><b>(문체부)</b>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p> <p><b>(농식품부)</b>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식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p> <p><b>(산업부)</b>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전MCS,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p> <p><b>(복지부)</b> (재)한국보건 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학진흥원</p>

구분	기관명
	<p><b>(환경부)</b>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환경보전협회</p> <p><b>(고용부)</b>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p> <p><b>(여가부)</b>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p> <p><b>(국토부)</b>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p> <p><b>(해수부)</b>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p> <p><b>(중기부)</b> (주)공영흡소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p> <p><b>(공정위)</b> 한국공정거래조정원</p> <p><b>(금융위)</b>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p> <p><b>(방통위)</b> 시청자미디어재단</p> <p><b>(원안위)</b>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p> <p><b>(보훈부)</b> 88관광개발(주), 독립기념관</p> <p><b>(식약처)</b>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p> <p><b>(관세청)</b> (재)국제원산지정보원</p> <p><b>(방사청)</b>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p> <p><b>(소방청)</b> 한국소방산업기술원</p> <p><b>(문화재청)</b> 한국문화재단</p> <p><b>(농진청)</b> 한국농업기술진흥원</p> <p><b>(산림청)</b>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p> <p><b>(특허청)</b>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p> <p><b>(기상청)</b>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APEC기후센터, 한국기상산업기술원</p>
지방공기업 (159)	<p>가평군시설관리공단, 강릉관광개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경주시시설관리공단, 고양도시관리공사, 과천시공사, 광명도시공사, 광주광산구시설관리공단,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교통공사, 광주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광주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환경공단,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도시공사, 구미도시공사, 군포도시공사, 기장군도</p>

구분	기관명
	<p>시관리공단, 김천시시설관리공단, 김포도시관리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단양관광공사, 대구달성군시설관리공단, 당진항만관광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교통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전교통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관광공사,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보령시시설관리공단, 부산관광공사, 부산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여군시설관리공단, 부천도시공사,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서울강남구도시관리공단, 서울강동구도시관리공단, 서울강북구도시관리공단, 서울강서구시설관리공단, 서울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서울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울교통공사, 서울구로구시설관리공단, 서울금천구시설관리공단, 서울노원구시설관리공단, 서울도봉구시설관리공단, 서울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서울동작구시설관리공단, 서울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울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울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서울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서울송파구시설관리공단, 서울시설공단, 서울양천구시설관리공단,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서울용산구시설관리공단, 서울은평구시설관리공단, 서울종로구시설관리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중구시설관리공단, 서울중랑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수원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안양도시공사,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양주도시공사, 양평공사, 여주시도시관리공단, 여주도시관리공단,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영양고추유통공사,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영천시시설관리공단,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용인도시공사,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울산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의왕도시공사,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인천관광공사, 인천광역시강화군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장수한우지방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천안도시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춘천도시공사, 충북개발공사,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충청남도개발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 파주도시관광공사, 평창군시설관리공단, 평택도시공사, 포천도시공사, 포항시시설관리공단, 하남도시공사, 함안지방공사, 합천군시설관리공단, 화성도시공사</p>
<p><b>지방의료원</b> <b>(35)</b></p>	<p>(서울) 서울의료원 (부산) 부산의료원 (대구) 대구의료원 (인천) 인천의료원</p>

구분	기관명
	<p>(경기) 수원병원, 안성병원, 의정부병원, 이천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 성남시의료원</p> <p>(강원) 강릉의료원, 삼척의료원, 속초의료원, 영월의료원, 원주의료원</p> <p>(충북)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p> <p>(충남)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천안의료원, 홍성의료원</p> <p>(전북)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p> <p>(전남) 강진의료원, 목포시의료원, 순천의료원</p> <p>(경북)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울진군의료원, 포항의료원</p> <p>(경남) 마산의료원</p> <p>(제주)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p>
특별법인(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은행

## 붙임 4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실적 관련 평가지표

□ 공기업·준정부기관 사회적 책임 평가 (평가주체: 기재부)

※ 출처: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사회적 책임」 평가지표 가중치 및 평가 기준(2023년도 경영평가편람(수정) 기준) ('23.11월, 기재부)

### < '사회적 책임' 세부평가항목(계량) >

사회적 책임	가중치	주관부처
①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2점	
② 안전 및 재난관리	1점	
③ 친환경·탄소중립	0.5점	
④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점	
중소기업생산품 구매	0.5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생산품 구매	0.2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생산품 구매	0.2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품 구매	0.2	고용부, 기재부
장애인생산품 구매	0.4	복지부, 고용부, 중기부
국가유공자생산품 구매	0.2	국가보훈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0.3	중소벤처기업부
⑤ 윤리경영	1점	
합 계	6.5점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및 서비스(0.2점) 평가배점은 대상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기업 70%, 사회적협동조합 30%로 평점 산정

### 1] 평가지표 체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비고
1. 이행도 (50)	1-1.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실적	50	정량
2. 향상도 (50)	2-1.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향상도	50	정량

## ② 평가기준 및 방법

### ① 이행도

평가지표	1-1.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실적(50점)
측정산식	<p>○ 해당기관의 당해년도 재화 및 서비스 구매총액 대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액 비율 (만점 0.1%)</p> $X = (\text{해당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 재화 및 서비스 구매액} / \text{해당기관의 재화 및 서비스 구매총액}) \times 100(\%)$ <p>&lt;평정점(P) 산출공식&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th>X &lt; 0.1</math>, <math>P = 50(X/0.1)</math></li> <li>- <math>X \geq 0.1</math>, <math>P = 50</math></li> </ul> <p>* '해당기관의 재화 및 서비스 구매총액'은 공사를 제외한 물품 및 용역의 구매총액, 단, '사회적협동조합 재화 및 서비스 구매액'은 공사 포함</p> <p>1.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율(X)이 0.1% 미만인 경우  <math>P = 50(X/0.1)</math>공식에 따른 점수 부여</p> <p>2.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율(X)이 0.1% 이상인 경우 일괄적으로 만점 50점</p>
평가근거자료	○ 이행실적 자료

### ② 향상도

평가지표	2-1.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액 향상도
측정산식	<p>○ 전년도말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액 대비 당해년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액 비율 (만점 10%)</p> $A = (\text{당해년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 - \text{전년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 / \text{전년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 \times 10 (\%)$ <p>&lt;평정점(P) 산출공식&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th>A \leq 0</math>, <math>P = 0</math></li> <li>- <math>0 &lt; A &lt; 10</math>, <math>P = 5A</math></li> <li>- <math>A \geq 10</math>, <math>P = 50</math></li> </ul> <p>※ 신규 지정된 기관의 경우 등 지표를 제외한 '이행도' 지표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 (단, 전년도에 기타 공공기관이었으며, 전년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실적이 있는 경우, 향상도 지표 평가 가능)</p> <p>1. 당해년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율(X)이 0.1% 이상인 기관의 경우, 전년대비 증감액과 무관하게 만점 50점 부여</p> <p>2. 당해년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 및 서비스) 구매율(X)이 0.1% 미만인 기관의 경우에는 위 산식에 따라 점수 부여</p> <p>* 단, 전년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이 0원인 경우, <math>A = \text{당해년도 구매율}(X) \times 100</math></p>
평가근거자료	○ 이행실적 자료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주체: 행안부)

※ 출처: 2024년('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매뉴얼(행안부)

국정 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치는 역동적 경제	국민 약속	2-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정 과제	2-6-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지표명	㉔ 환경친화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우선구매율																																																																																							
측정 방법	<p>○ 산식</p> <p>- 사회적 가치 확산 분야 구매율          {(자활용사춘 복지공장, 마을기업, 자활기업, <b>사회적협동조합</b>, (인증·예비)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생산품, 녹색제품 구매액) / 총구매액} × 100</p> <p>○ 산식 설명</p> <p>- 총구매액 :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품, 용역 구매를 위해 지출한 총 금액          - 사회적 가치 확산 분야 구매액 : 8개 분야 구매를 위해 지출한 금액          · 사회적협동조합 구매액: 물품, 용역 구매 인정 (공사 제외)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지출관리 - 지출결산 - 기타구매실적 - 사회적협동조합 구매실적 활용</p> <p>○ 2023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목표치(%) 및 최저치(%): 지역별 상이          · 최저치는 목표치의 70%</p> <p>○ 목표치: 8개 분야 중 4개 이상 목표치 달성,          8개 분야 중 5개 이상 최저치 달성</p> <p>○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p> <p>○ 평가기준일: 2023. 12. 31.</p>																																																																																							
구현 서식	<p>○ 사회적가치 확산 구매율 (단위 : 백만원, %)</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총 구매액 (A)</th> <th colspan="8">사회적가치 확산 구매액</th> <th rowspan="2">구매율 (B/A) ×100</th> </tr> <tr> <th>계 (B)</th> <th>자활용사춘</th> <th>마을기업</th> <th>자활기업</th> <th>사회적협동조합</th> <th>(인증·예비) 사회적기업</th> <th>장애인표준사업장</th> <th>중증장애인</th> </tr> </thead> <tbody> <tr> <td>합계(a+b)</td> <td></td> </tr> <tr> <td>○○시도 a</td> <td></td> </tr> <tr> <td>시군구 합계 b</td> <td></td> </tr> <tr> <td>○○ 시</td> <td></td> </tr> <tr> <td>○○ 군</td> <td></td> </tr> <tr> <td>○○ 구</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총 구매액 (A)	사회적가치 확산 구매액								구매율 (B/A) ×100	계 (B)	자활용사춘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인증·예비)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	합계(a+b)											○○시도 a											시군구 합계 b											○○ 시											○○ 군											○○ 구										
구 분	총 구매액 (A)	사회적가치 확산 구매액								구매율 (B/A) ×100																																																																														
		계 (B)	자활용사춘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인증·예비)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																																																																															
합계(a+b)																																																																																								
○○시도 a																																																																																								
시군구 합계 b																																																																																								
○○ 시																																																																																								
○○ 군																																																																																								
○○ 구																																																																																								
연계 시스템	e호조시스템(지방재정시스템)																																																																																							
분석 자료	시·도, 시·군·구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실적																																																																																							
증빙 자료	<p>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실적</p> <p>-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 DB와 대금지급처의 사업자번호 비교 산출</p>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평가주체: 행안부)

※ 출처: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안) ('23.1, 행안부)

지 표 명	정부정책 이행실적										
대 분 류	경영성과			중 분 류	정책이행성과						
가 중 치	1.0점	지표성격	정량	평가방법	단계별						
지표정의	○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행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및 구매실적 등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산품 구매 실적(1.0점)										
세 부 평가방법	○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구매실적 평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득점 산식</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td> <td><math>X/2\% \times 1</math>점</td> <td>                     X = 총 구매 물품,용역(공사 제외) 대비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물품,용역 구매율(%)                      ※ 2% 초과하는 경우 최고값 1 부여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인증사회적기업                 </td> </tr> </tbody> </table>					구분	득점 산식	비 고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X/2\% \times 1$ 점	X = 총 구매 물품,용역(공사 제외) 대비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물품,용역 구매율(%) ※ 2% 초과하는 경우 최고값 1 부여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인증사회적기업
	구분	득점 산식	비 고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X/2\% \times 1$ 점	X = 총 구매 물품,용역(공사 제외) 대비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물품,용역 구매율(%) ※ 2% 초과하는 경우 최고값 1 부여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인증사회적기업									
- 구매실적은 주무부처의 실적자료를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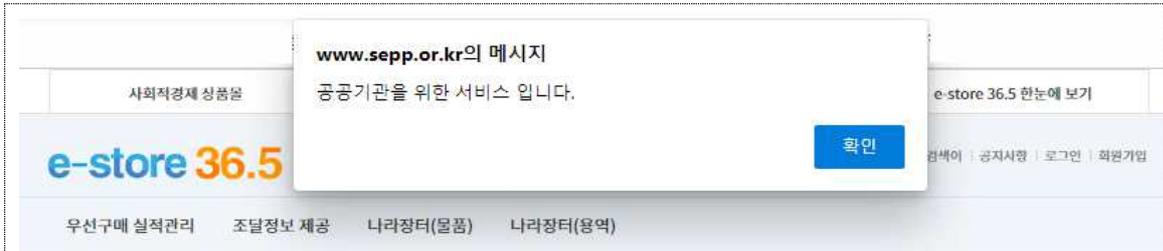
## 붙임5

##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 방법

### □ e-store 36.5(www.sepp.or.kr) 접속 및 로그인

○ 우선구매 실적관리자(1기관당 1계정) 권한 승인 후 접속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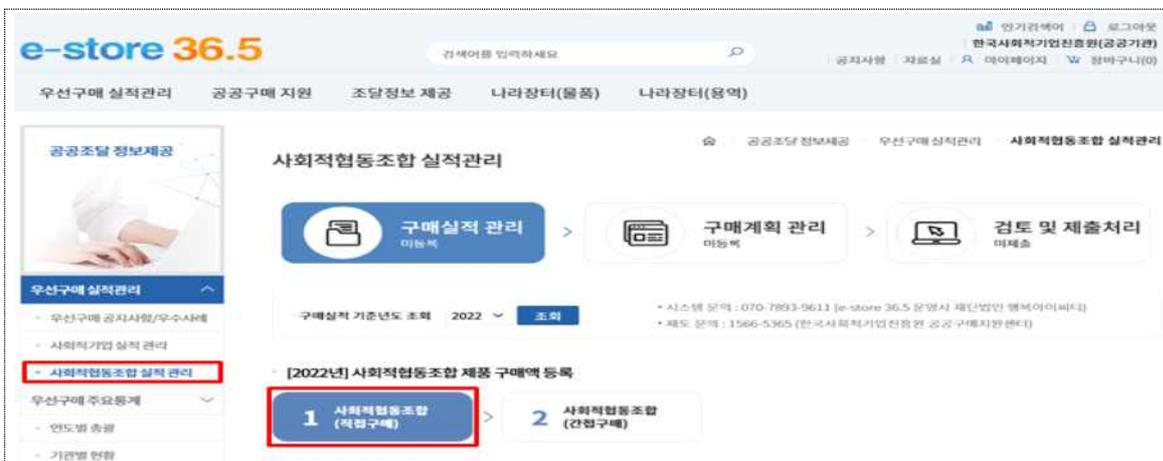
\* 문의: 사이트 하단의 고객센터 번호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6953)



○ [우선구매 실적/공공조달] → [우선구매 계획/실적 등록]



○ [사회적협동조합 실적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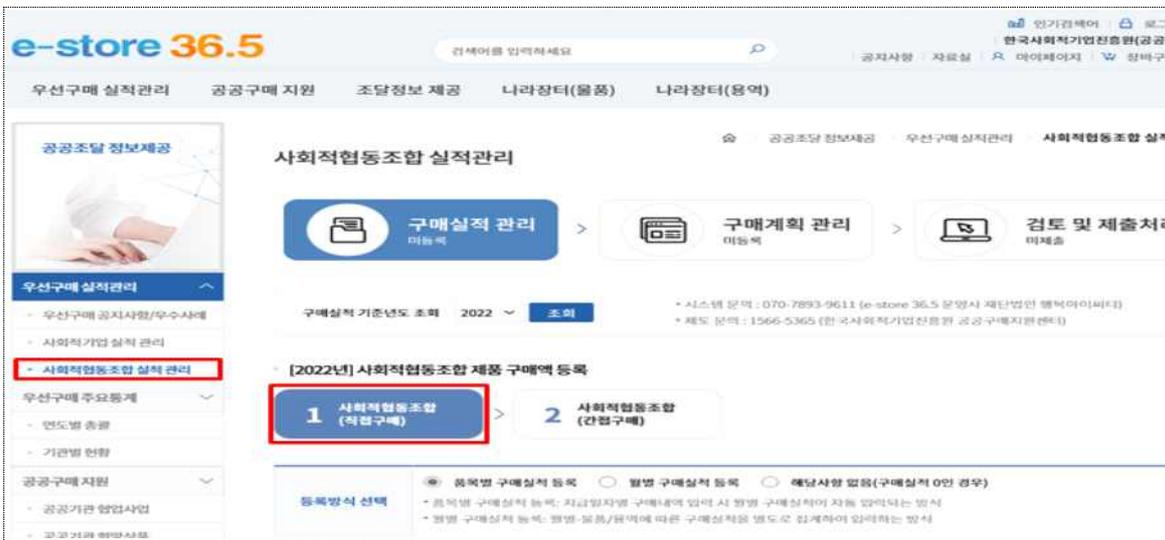


○ '23년 총구매액 등록

- 총구매액은 '사회적기업 구매실적' 입력 시 기입한 총구매액 (기관 전체 물품+용역 구매액)과 자동 연계됨(별도 입력X)

○ '23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직접구매) 등록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제출' 후 등록 가능
- 1) 품목별 구매실적 등록, 2) 월별 구매실적 중 택1하여 등록
- 구매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클릭



1) 품목별 실적 등록



- 엑셀 양식 파일(사회적협동조합\_직접구매\_품목실적(양식).xlsx)에 '23년 구매실적 작성
- (작성항목) 지급일자, 최하위기관명(부서명), 적요(건명),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등록번호, 지급금액, 통계목
- \* 작성항목은 모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간접구매인 경우에는 '통계목'에 간접구매로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통계목 작성 필수
- (유의사항) 모든 엑셀 양식의 데이터 표시형식은 모두 [텍스트]이며, 원본의 표시형식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함(변경시 등록오류 발생)

**<엑셀 양식 작성시 유의사항>**

**원본 데이터 표시형식('텍스트') 유지**

- 지급일자 : [YYYY-MM-DD] 또는 [YYYYMMDD] 형태 유지, [날짜] 형식으로 변경 금지
- 사업자등록번호 : [AAA-BB-CCCCC] 또는 [AAABBCCCCC]의 형태 유지, [사용자지정] 형식으로 변경 금지
- 지급금액 : [회계] 또는 [통화]로 변경 금지, '원' 단위 작성

**<표시형식 유지 방법>**

: 엑셀에서 작성한 내용 복사 → 메모장에 붙여넣기 → 메모장에 붙여넣은 내용을 다시 복사 → 엑셀 표시형식을 [텍스트]로 지정 후 붙여넣기

**하단 공란 삭제**

- 작성내용 하단에 테두리만 있는 공란이 있는 경우 모두 삭제

직접구매(2021년)

오류화면 예시

지급일자	하위기관명(부서명)	적요(건명)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등록번호	지급금액	통계목
2021-03-08	스케일업 TFT	워크숍 기념품 구입	123-45-67890	600000	
2021-05-27	판로지원팀	책자 인쇄	456-78-90123	720000	
2021-08-19	인증평가팀	기념품 구입	789-01-23456	2800000	



○ [파일 선택] → 작성한 파일 업로드 → [등록방식] 선택 (초기화 후 등록 또는 추가등록) → [데이터 정합성 검사] → [오류검사결과] 확인(정상, 공란, 오기재, 중복) 및 수정 → [저장하기]



○ 제품 구매액 입력내역 확인  
(총구매액은 사회적기업 실적 입력자료 자동 연계)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 총 구매액 입력내역 확인**  
\* 총 구매액은 "사회적기업 실적관리" 에서 등록된 총 구매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단위: 원)

시기	실적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2021)		총 구매액(2021)	
		물품	용역	물품	용역
1분기	1월	0	0	5,000,000	5,000,000
	2월	0	0	5,000,000	5,000,000
	3월	600,000	0	5,000,000	5,000,000

## 2) 월별 구매실적 등록

- 품목별 구매실적 방식으로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선택하고, 품목별 구매실적 등록 시 등록하지 않음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 등록

1 사회적협동조합 (직접구매) > 2 사회적협동조합 (간접구매)

등록방식 선택

· [사회적협동조합(직접구매)]

· 품목별 세부실적

· 등록일(최근 변경일) 2022. 01. 07. 16:33

팝업 메시지: 사회적협동조합(직접구매)는 품목별 실적이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월별 구매실적을 등록하면 기존 실적은 삭제됩니다.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항 없음(구매실적 0인 경우) 자동 입력되는 방식 / 0이 입력하는 방식

· 품목별 실적을 등록하면, 해당 실적이 구매실적에 자동 반영됩니다.  
· 통계목은 e호조시스템 이용 자치단체 전용 항목으로, 그 외 기관은 미가입 가능합니다.

- 월별 구매실적 등록 클릭, 엑셀 양식 다운로드

등록방식 선택

품목별 구매실적 등록  월별 구매실적 등록  해당사항 없음(구매실적 0인 경우)

· 품목별 구매실적 등록: 지급일자별 구매내역 입력 시 월별 구매실적이 자동 입력되는 방식  
· 월별 구매실적 등록: 월별-물품/용역에 따른 구매실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입력하는 방식

· [사회적협동조합(직접구매)] 월별 구매실적 등록

구매실적

엑셀 업로드  엑셀양식 다운로드

등록일(최근 변경일) 2022. 01. 07. 16:33

- 엑셀 업로드 할 경우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는 자동 삭제되며, 최근 업로드한 엑셀 정보만 노출됩니다.

- 엑셀양식에 월별 구매액 작성(구매금액 없을 경우 0원 기입)

구매실적(2021년)

실적구분	대상구분	1월	2월	3월
사회적협동조합 구매액	물품	250000	300000	150000
사회적협동조합 구매액	용역	750000	600000	370000

## ○ 데이터 정합성 검사 후 저장하기 클릭

**구매실적(2021) 사회적협동조합 (직접구매) 엑셀업로드**

STEP1. 구매실적 관리에 필요한 엑셀파일 등록합니다.

C:\Users\user\Desktop\사회적협동조합\_구매\_찾아보기...

※ 엑셀로 업로드 할 경우 기존에 저장(수정)된 데이터는 자동 삭제되며, 최근 업로드한 엑셀 정보만 노출됩니다.

STEP2. '데이터 정합성 검사' → 오류 확인 → 엑셀수정 → 재검사 → '저장'(오류 없을 시에만 저장 버튼이 자동으로 활성화 됨)

\* 데이터 정합성 검사 시, 공란 또는 오기체 등 오류부분은 화면 상 분홍색으로 표시됩니다.

데이터 정합성 검사 | 오류권시결과 | 정상 28건 / 공란 0건 / 오기체 0건

저장하기 | 닫기

월적구분	대상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회적협동조합 구매액	물품	250000	300000	150000	20000	40000	80000	68451213	786546	456456	456	456	456
사회적협동조합 구매액	용역	750000	600000	370000	9842132	60000	12312456	453454345	456456	456456	456	456	456

## ○ 하단 제품 구매액 입력 내역 확인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 총 구매액 입력내역 확인**  
\* 총 구매액은 "사회적기업 실적관리" 에서 등록된 총 구매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단위: 원)

실적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2021)		총 구매액(2021)		
	물품	용역	물품	용역	
1분기	1월	250,000	750,000	5,000,000	5,000,000
	2월	300,000	600,000	5,000,000	5,000,000

## ② '23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간접구매) 등록

- 입력방법은 직접구매와 동일하며, 입력 완료 시 제품 구매액은 직접구매+간접구매 합계액으로 구현

등록방식 선택

품목별 구매실적 등록  월별 구매실적 등록  해당사항 없음(구매실적 0인 경우) **3중 택1**

\* 품목별 구매실적 등록: 지급일자별 구매내역 입력 시 월별 구매실적이 자동 입력되는 방식  
\* 월별 구매실적 등록: 월별-물품/용역에 따른 구매실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입력하는 방식

- [사회적협동조합(간접구매)] 월별 구매실적 등록

구매실적 | 엑셀 업로드 | 엑셀양식 다운로드

등록일(최근 변경일) | 2022. 01. 07. 16:55

※ 엑셀 업로드 할 경우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는 자동 삭제되며, 최근 업로드한 엑셀 정보만 노출됩니다.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 총 구매액 입력내역 확인**  
\* 총 구매액은 "사회적기업 실적관리" 에서 등록된 총 구매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단위: 원)

실적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2021)		총 구매액(2021)	
	물품	용역	물품	용역
1월	500,000	1,500,000	5,000,000	5,000,000

### ③ '24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계획 등록

- 계획 또한 공시되므로 반드시 작성
- 구매실적 저장 후 계획 등록 가능

소계	141,071,166	956,606,426	55,000,000	50,000,000
총계	1,097,677,592		105,000,000	

엑셀다운로드 구매실적 저장

- 구매실적과 동일한 방법으로 엑셀 업로드

· [2022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계획 등록

· 구매계획 일괄등록

구매계획	엑셀 업로드	엑셀양식 다운로드
등록일(최근 변경일)	2021. 10. 19. 18:06	

· 엑셀로 업로드 할 경우 기존에 저장(수정)된 데이터는 자동 삭제되며, 최근 업로드한 엑셀 정보만 노출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 입력내역 확인

· [2022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 총 구매액 입력내역 확인 (단위: 원)

\* 총 구매액은 "사회적기업 실적관리" 에서 등록된 총 구매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실적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2022)		총 구매액(2022)	
	물품	용역	물품	용역
1분기				
	1월	10,000	10,000	5,000,000
	2월	10,000	10,000	100,000

- 구매계획까지 입력 완료 후 검토 및 제출 처리 클릭



#### ④ 검토 및 제출 처리

##### ○ 구매실적 정보 입력 결과 확인

**[2021년] 품목실적 정보** **월별 구매실적 입력 시 품목실적 정보는 0원으로 구현, 품목실적 입력 시 입력 값 구현** 월별현황 상세내역 조회

구분	물품(원)	용역(원)	소계(원)	총계(원)
사회적협동조합 구매액	직접구매	0	0	0
	간접구매	0	0	

**[2021년] 구매실적 정보** **입력한 직접구매 및 간접구매 실적 합계 [총구매액은 사회적기업 구매실적 입력 시 입력한 값을 따름]** 월별현황

구분	물품(원)	용역(원)	소계(원)	총계(원)	비율(%)	
총구매액	55,000,000	50,000,000	-	105,000,000	-	
사회적협동조합 구매액	직접구매	70,535,583	478,303,213	548,838,796	1,097,677,592	1,045.41
	간접구매	70,535,583	478,303,213	548,838,796		

##### ○ 구매계획 정보 입력 결과 확인

**[2022년] 구매계획 정보**

구분	물품(원)	용역(원)	합계(원)	비율(%)
총구매액	20,700,000	20,700,000	41,400,000	-
사회적협동조합 구매액	81,000	81,000	162,000	0.39

##### ○ 담당자정보 입력 후 제출 버튼 클릭(클릭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로 간주)

**담당자정보 입력**

부서	스케일업TFT		
연락처(사무실)	031	- 697	- 7743
연락처(핸드폰)	010	- 1234	- 5678
이메일(기관 계정)	coop	@ ikosea.or.kr	직접입력 ▼

**제출**

##### ○ 제출 여부 반드시 확인



< 작성시 유의사항 >

- **구매실적 작성대상 : '사회적협동조합'만 작성**  
(일반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총구매액] : 물품과 용역(공사 제외) 구매금액**(SMPP 총구매액 기준 참조)  
품의 유형과 무관하며 물품, 용역 구매 관련 예산 비목으로 지출한 **총구매액**
- **구매한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이 없을 경우**  
→ **[총구매액] 반드시 입력,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 "0" 입력**
  - 국가부처, 자치단체, 교육청 → 디브레인, 이호조, 에듀파인 등 재정시스템 조회
  - 그 외 공공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명단을 자체 재정시스템에 반영 집계
- **구매실적 및 계획 집계 기준 시점은 계약일이 아닌 대금 지급(집행)일 기준**
  - '23년도 구매실적 입력 대상 기간: 2023.1.1.~2023.12.31.
  - '24년도 구매계획 입력 대상 기간: 2024.1.1.~2024.12.31.
  - \* 계약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제 대금 지급일 기준
- [2024년도 구매계획]은 [2023년도 구매실적]을 참고하여 작성
- **[총 구매액]과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에서 모두 제외되는 항목**
  - **재화, 서비스 구매와 관련 없는 금액**
    - \* 기관운영을 위한 일상 경비적 지출(인건비, 공공요금, 각종 보험료, 식대 등)
    - \*\* 개인에게 지급되는 자문료, 사례금, 수당 등
    - \*\*\* 산하기관 출연금, 각종 보조금, 기부금 등
  - **원자재, 재료 구매액**
    - \* 가스, 석유, 전력, 유류, 연료, 광물 등
- **[총 구매액]에는 포함되나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 기타 유통 업체(장애인판매시설, 일반 판매점 등)에서 구매한 내역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지 않은 제품 구매액**
  - 유통 전문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구매한 내역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지 않은 일반기업 제품 구매액**
  - 세트상품은 세트를 구성하는 물품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기업이 생산한 물품가액이 전체 가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제도 관련**

질문	<p><b>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b></p>
답변	<p>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 지침의 &lt;붙임2&gt;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최상위 단위가 소속 하위 단위의 구매실적을 합산하여 최상위 단위 전체 실적으로 포함하여야 합니다.</p> <p>※ 교육청의 경우 광역단위가 소속 기초단위 구매실적 합산</p> <p>단,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별도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실적에 합산하지 말고 소속 기관의 실적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p> <p>※ 지방공기업의 경우 자치단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p>
질문	<p><b>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실적에 포함되는 구매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b></p>
답변	<p>공공기관이 예산을 통해 재화(물품) 및 서비스(용역)를 직접 구매한 경우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구매한 경우(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행기관이 용역 수행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을 구매한 경우도 포함됩니다.</p> <p>다만, 간접구매의 경우 용역(물품)업체와 사회적협동조합 용역(물품) 구매계약 증빙자료로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 및 보관하여야 합니다.</p>
질문	<p><b>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은 법적 의무구매비율이 있나요? 구매계획 수립 시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요?</b></p>
답변	<p>법적 의무구매비율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평가 중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실적 지표, 타 제품의 의무구매비율,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매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p>

**질문**      **우리 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실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국가기관(dBrain), 자치단체(e-호조), 교육청(에듀파인), 지방의료원(K-HOPES), 지방공기업(LOBAS)은 각 재정시스템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거래내역을 집계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관은 e-store36.5(www.sepp.or.kr)사이트 내 '공공조달 정보' → '우선구매 실적입력'에 게시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관련 DB를 다운받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거래내역을 집계할 수 있도록 개별 재정시스템에 반영하여 활용하기 바랍니다.  
  
단, 기관의 재정 시스템으로 집계되지 않는 구매실적 및 간접구매 내역은 구매증빙 등을 확인하여 집계하셔야 합니다.

**질문**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답변**      협동조합기본법 상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단독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협동조합은 5천만원 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실적 관련**

**질문**      **유통업체 등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대행기관을 통한 구매도 구매 실적에 포함되나요?**

**답변**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중증장애인판매시설로부터 구매한 물품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한 물품 구매액은 포함되나, 일반 기업이 생산한 물품 구매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물품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구매내역서 등)를 확인·보관하여야 합니다.

**질문**      **구매 당시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니었으나, 해당 연도 말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받은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연도말 기준으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받은 업체에서 구매한 경우, 해당 연도 내에서는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질문	<b>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은 어떻게 활용되나요?</b>
답변	<p>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은 협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a href="http://www.coop.go.kr">www.coop.go.kr</a>) 에 공고하며,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정부정책 이행 평가 통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p>
질문	<b>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사에서 구매한 제품도 실적으로 인정되나요?</b>
답변	<p>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사가 될 수 있으나, 조합사에서 생산한 제품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구매 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p>
질문	<b>사회적협동조합 지점에서 구매한 제품도 실적으로 인정되나요?</b>
답변	<p>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3항에 따라 지사무소(지점)을 둘 수 있으며, 지점과의 거래도 우선구매 실적에 포함됩니다. 단, 사회적협동조합 본점과 지점의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시어 지점 관련 여부를 확인·증빙하여야 합니다.</p>